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용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의5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5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15 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 -----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교통사고 등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1. ----- --- 제35조-----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705